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교육 제공 등〉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46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8.
- (3) 회 부 일 : 2025.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 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③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안전문화활동과 안전 체험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4조의2(재난시 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24조의3(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

<신 설>

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4(재난안전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장애인은 대표적인 재난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판단, 대처 능력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정도가 더욱 클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화재로 숨진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

또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 및 사고로부터 ‘위험’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020년 11.8%에서 2023년 32.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난 시 행동요령을 모르는 장애인은 24.2%에서 36.4%로, 스스로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25.8%에서 29.1%로, 대피를 도와줄 조력자가 없는 장애인은 28.9%에서 32.2%로, 소화기·경보기 등 안전용품이 없는 장애인은 32.3%에서 35.5%로 각각 증가하는 등²⁾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당수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별도로 지정·운영하여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공간적·물리적 배제를 해소하며,

1)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연구. 정책 23-2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③ 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과 이해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안전문화활동과 안전체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재난관리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기능 중복 방지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³⁾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 제24조의2(재난시 장애인 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

3) Chae, J. (2010). 조직, 관리 요인이 재난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0(1), 44-54.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둘째, 개정안 제24조의3(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과 관련,

「민방위기본법」, 「재해구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재난 유형별 대피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등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에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는 지정 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시설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4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장애인 등 구호약자를 고려하여 임시주거 지원, 점자안내서가 부착된 응급구호세트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은 재해약자를 위한 별도 대피안내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재난 관련 대피시설 지정 현황>

구분	법적근거	지정현황 (전국)	관련 지침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⁴⁾	17,064개소 (2023.12. 기준)	「민방위 업무지침」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법」 제4조의2 ⁵⁾	15,818개소 (2024.4. 기준)	「2024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0조의3 ⁶⁾	11,340개소 (2024.4.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주1): 민방위 대피시설 중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244개소, 공공용 대피시설은 16,820개소
 자료: 행정안전부, 재구성

□ 셋째, 개정안 제24조의4(재난안전교육 등) 관련,

안전문화활동과 안전체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 4)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5)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령과 지침에 유사한 취지의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안전체험시설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특화 안전체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별도로 신설할지, 또는 기존 법령에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조치 및 특화시설 설치 등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지에 대해서는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안전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적음.

나. 기획재정부

-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도 재난 발생 시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별도 계층별 추가 지원 조항은 없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 실익적으며,

시급성이 핵심인 재난 대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별도 계층만의 대피시설 지정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다. 행정안전부

□ 개정안은 장애인대피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5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 소유 시설물임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없어 해당 시설을 장애인 대상 대피시설로 지정·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거주지 인근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라. 충청남도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구호기관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접근성, 이 재민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난대피시설(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4조의3제1항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제2항에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난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근거
거법, 관리부서 등이 이원화 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대
피 상황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